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42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윤한홍 · 권성동 · 박상웅
김상훈 · 고동진 · 엄태영
장명구 · 김대식 · 최보운
김기현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및 제130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제4호의2 신

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4의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벌칙) ----- ----- -----.
1. 제17조를 위반하여 <u>지주회사</u> 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u>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u>	<삭 제>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u>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30조(과태료) ① ----- ----- ----- ----- ----- -----

는 1억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 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u>1의3.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